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A Review on Needs and Related Law of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for the Diffusion i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

김선광(Sun-kwang Kim)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규정의 특징과
문제점 |
| II.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의의와 도입 배경 | V. 결 론 |
| III.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유사입법과
입법내용 | 참고문헌 |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an individual or enterprise to interchange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siness, owing to rapid process of transactions. But e-commerce encounters the problems regarding the handling the electronic documents, that is to say, deposit and proof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as an integrated system for processing, relaying and proving documents that .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operates as e-enabler in exchanging documents in trust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 comprehensive government directory, digital government seal certification system and DNS system.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lead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ave the paper-related costs. But the regulations concerning an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legalizing the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Key Words: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Electronic Document, Digital Notary Service(DNS)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그것이 상거래이든 단순한 정보교환이든 종래의 종이문서에 의한 방식을 상당 부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의 등장은 단순히 전통적인 종이문서의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서 및 전통적인 사무업무의 성격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 과거에 종이문서에 의존하던 일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종이문서의 작성, 보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른바 무서류(paperless)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는 국가경제를 보다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로 가져가기 위한 국가 차원이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늘날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한편에서, 종이문서를 급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한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즉 전자문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것인가,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자문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고, 역으로 전자문서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의 확대로 전자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중계, 전자문서의 증거효력 부여 등을 위하여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현재 법원에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도 전자문서 형태로 모색하고자 하는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도 송·수신 대행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있다면 추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문서 전자화의 확산으로 현재 입법예고되고 있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적절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입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의의와 도입배경

1.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의의와 전자공증과의 관계

1)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의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송수신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12조 1) 제12조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에 관한 조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송수신 대행 등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하고³⁾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고,⁴⁾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의 보관은 누구나 전자문서의 보존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시 전자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전자문서의 송수신대행 및 중계업무는 누구나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중계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이고, 증명업무는 전자문서의 당사자, 내용의 동일성, 송수신여부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⁶⁾

2) 공인 인증기관과 전자공증과의 관계

(1) 공인 인증기관과 전자공증의 의의

공인 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 인증기관과는 별도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의 인증·확정일자 부여 등 사무를 행하는 전자공증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자공증이란 종래 서면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증사무를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다시 말해서 전자적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특정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하거나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이는 공증사무의 운영주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면에서 현재의 공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서명과

1) 전자거래기본법 중개정법률안 제2조 제8호.

2) 제12조 ①

3) 제12조 ②

4) 제12조 ③

5) 제12조 ④

6) 이창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05.07, p.11.

7) 배대현·안효질·신일순·강준모, 「전자문서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12, p.42.

8) 신일순·김춘아·박민성,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12, p.43.

인증이 주로 정보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임에 비하여, 전자공증제도는 정보내용의 소실이나 변경에 대비하여 정보의 교환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게 작성된 정보의 기록을 보관시키고 이를 근거로 후일 분쟁이 발생한 때의 정보의 존재·내용이 증명되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⁹⁾

(2) 공인 인증기관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관계

공인 인증기관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은데, 이 표에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¹⁰⁾ 공인 인증기관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기업의 안전한 전자문서 활용촉진을 위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¹¹⁾

<표 1> 공인 인증기관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비교

구분 내용	공인 인증기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정 의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전자문서보관, 증명 서비스 제공기관
근 거 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법적 효력	공인인증서기반의 전자서명 효력인정	전자문서의 작성, 보관, 증명 등
주요 역할	대면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인증서발급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수행업무 증명력 인정
성 격	전자거래의 인프라적 요소 -안전한 거래 및 정보보호에 중점 -보안에 중점	전자거래 비즈니스(응용) 촉진적 요소 -기업의 이용확산에 중점 -비즈니스의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 중점
관 련 표 준 화	PKI관련 표준	전자문서표준, 산업계 BP(비즈니스 프로세스)
지정조건	기술능력(서버 보안관점), 재정능력, 시설장비	기술능력(보관/보존/유통 및 서비스/사용자프라이버시/서버보안), 재정능력, 시설장비
지정기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자료: 민철홍,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방안”, 「2003년도 제1회 e-Trade산학연 종합포럼 및 동계정기학술발표대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20, p.161.

9) 배대한·안효질·신일순·강준모, 전게서, p.44.
 10) 강현구, “e-비즈니스 관련법제의 현황 및 정비방향”, 「e-비즈니스의 새로운 이슈와 동북아 e-Hub 구축방안」,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3.05.31, p.283.
 11) 민철홍,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방안”, 「2003년도 제1회 e-Trade산학연 종합포럼 및 동계정기학술발표대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20, p.161.

2. 도입배경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문서의 확산과 종이문서의 한계

(1) 전자문서의 확산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대적 문자의 등장은 중세기 인쇄술의 발명 이후 수백 년 간 종이와 인쇄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자문명을 주도해 왔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종이문서와 그 기능적 등가적 속성을 유지한 문자소재를 발명하게 하였으며, 이른바 전자문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서작성 및 보존방법이 확산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전자서명법 제2조는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개념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기타 정보처리 장치 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처리,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아닌 무역 EDI나 국가기관 등 행정부처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 등에서도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문서의 형식에 따라 이메일과 같이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작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비표준화된 전자문서와 EDI에서 이용되는 문서처럼 문서의 형식이 일반적 표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양자는 전자문서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 단독행위로서의 의사표시, 준 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등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자문서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적 이행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 동영상 내지는 음성·음향파일도 전자문서의 개념에서 배제하기 어렵다.¹²⁾ 이와 같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는 전자문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종이문서의 이용실태 및 한계

종이문서는 당사자의 편의와 희망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지만, 법률에 의해 문서의 작성이 강제되기도 한다.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개정」의 목적은 후자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의 대상은 문서의 작성을 강제하는 법률이 될 것인데, 현재 서류의 제출·통지·보존 등 문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전체 1027개의 법률 중 714개에 이른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면행위는 하나에 그치는 것이

12) 오병철, 「전자거래법」, 개정판, 법원사, 2000, p.66.

아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종류는 대략 다섯, 여섯 가지에 이르며, 예컨대 상법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작성을 요구하는 문서의 종류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험할 일이 매우 드문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개인 또는 기업이 주기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작성해야 할 문서가 대부분이다.¹³⁾

한편 종이문서 작성의 의무화는 막대한 종이문서 제작·운송·보관비용을 초래한다. 종이문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유형은 紙代, 紙類의 운송·운반비, 인쇄·제본비, 문서의 제출을 위한 인력 이동비, 인쇄물의 보관을 위한 공간의 환산비용, 보관을 위한 인건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서의 유실에 따르는 위험도 역시 종이문서를 강제함으로써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단적인 예로 연간 매출액이 32조에 이르는 삼성전자가 연간 생산하는 문서량은 약 5,328만장에 달하는데, 이를 부피로 따지면 2m 높이로 500평을 차지하는 크기이다. 또 서류는 대개 보관기간이 5년에서 10년에 달하는데, 5년만 잡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보관량이 2억 6,190만장에 달한다. 이를 삼성전자와의 매출액대비로 환산하면, 연간 매출액이 1,308조에 이르는 전체 국내기업이 연간 생산하는 문서량은 약 21억 1,592만장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이 정도 분량의 종이문서라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도 엄청난 낭비라고 할 수 있다.¹⁵⁾

2) 전자문서의 보관, 중계, 증명과 관련한 필요성 증대

(1) 전자문서의 보관상의 필요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전자문서의 양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자문서의 보관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¹⁶⁾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전자문서의 취급에 대한 부담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원본성이 훼손됨이 없이 보존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대행하거나 중계하는 업무를 맡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3자 기관(TTP)으로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인력, 재정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며 그 반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 기업은 전자문서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맡김으로써 원본성 보장장치를 마련할 부담을 덜 수

13) 최동호·신동진, “전자문서의 개념과 종이문서 대체가능성”, 「산경연구」, 제3집, 영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12, p.2.

14) 민철홍, 전개서, p.157.

15) 그밖에도 현대자동차가 국제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세무관련서류는 5톤 트럭 30대 분량에 달하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은 자료보존용으로만 1,000여 평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국내 A4용지 시장규모가 2,000억 원이며, 국내 상장기업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연 150억 원의 우편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는 추정수치도 제시되고 있다.

16)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05.07, p.39.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원본성 보존의 필요를 느끼는 전자문서들을 필요시 이 기관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는 일반적으로 생성, 유통, 보관, 폐기 등의 수명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보관이라는 부분이 막혀서 궁극적으로 전자문서의 생성, 기타 이용 자체가 억제를 받게 되면 문서유통을 통한 획기적인 비용절감이나 사회 전체시스템의 효율화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¹⁷⁾ 공인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증계상의 필요성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대신하거나 증계하는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TTP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는 개별법의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 증계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과정에서 전자문서가 소멸되거나 개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송신되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터넷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부에서 인가받은 TTP에게 그러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인 전자문서저장소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공적인 수요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전자기록화를 추진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러한 접수체계의 추진도 송수신 대행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있다면 매우 용이할 것이다.

(3) 전자문서의 증명상의 필요성

전자상거래 현장에서 보면,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하여 그 송수신 시점, 내용, 당사자 등에 관하여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자문서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송신하였는지를 사후에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다면 전자문서를 이용한 상거래 및 행정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무역의 예와 같이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다수 당사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 당사자 내용 등에 대한 증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른바 “전자공증서비스(Digital Notary Service : DNS)”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제공하는 회사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17)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2003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1)-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02, p.114.

뒷받침이 아직 미흡하여 아직 충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전자공증서비스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대행 및 중계, 증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을 수 있는 제3자 기관으로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법적인 뒷받침 하에 생겨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모든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유사입법과 입법내용

1.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유사입법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입법내용과 관련한 국내의 관련 법규에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 관한 관세법, 무역자동화사업자에 관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관세법은 200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에서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 관한 관세법의 제정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세법상에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개정된 관세법에 의하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본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 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¹⁹⁾ 또한 본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²⁰⁾고 규정하고 있다.

18) 관세법 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항.

19) 관세법 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2항.

20) 관세법 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3항.

〈표 2〉 관세법상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한 규정내용

구 분	조 문 내 용
전산처리설비의 이용(327조)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자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327조의 2)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제3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²¹⁾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 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²²⁾

즉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취지가 세관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때, 새롭게 신설된 관세법의 규정내용에서는 전자문서 중계업무사업자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전자문서 보관사업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27조의 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폐쇄형 네트워크 도입 초기단계에서 마련되었으며, 무역

21) 관세법 제327조의 2(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지정) 제1항.

22) 관세법 제327조의 2(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지정) 제6항.

과 관련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대행을 지정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필요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상에서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규정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상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한 규정내용

구 분	조 문 내 용
사업자의 자격 (제4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자의 지정등 (제5조)	① 사업자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 2. 전자문서 또는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의 전송 등의 사업 3.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의 제작 및 보급사업 4.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5.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역업자를 위하여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사업 및 대행처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관리 6. 기타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제16조)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상의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²³⁾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자의 지정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본 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정사업자는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 전자문서 또는 무역화물유통 정보 등 무역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전송 등의 사업,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 및 보급사업,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보급과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역업자를 위하여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대리처리사업”이라 한다) 및 대행처리사업을 하는 자(사업자를 제외 하며, 이하 “대행처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 기타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23)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제4조 (사업자의 자격).

24)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제5조 (사업자의 지정 등) 제2항.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사업자를 통하여 송·수신된 전자문서 내용의 효력은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또는 승인 등을 한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⁶⁾ 이 규정은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원래 민원업무에 전자자료교환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년 12월 6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 명칭인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이어받은 규정이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한 규정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한 규정

구 분	조 문 내 용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제18조)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자승인 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이 정한 문서와 해당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제20조)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

25)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제5조 (사업자의 지정 등) 제2항.

26)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제16조 (전자문서 내용의 효력).

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는 “허가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⁷⁾ 이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필요성이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은 각각 해당 법령이 정한 문서와 해당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간주하며,²⁸⁾ 본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²⁹⁾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며, 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¹⁾

2)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상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규정

(1)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취지와 주요 골자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취지는 전자문서의 이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으로써 전자문서의 송수신 대행 및 중계, 보존 등을 수행할 공인기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대부분의 서면절차에서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서면절차를 전자문서에 의해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³²⁾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³³⁾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 준 법률행위 및 급부의 이행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전자문서의 효력을 급부의 이행 등의 효력을 포함하는 법적 효력으로 바꾸어 전자문서의 효력을 확대하였다.

셋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는 서증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종이문서와 대등하게 하여 전자문서의 증거채택 간이화를 도모하였다.

27)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8)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29)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0)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3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32) 산업자원부, “전자거래기본법 중개정법률안”, 2003.05, p.2.

33) 전게서, pp.2-4.

넷째, 정부는 전자문서이용 촉진을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개인간 또는 개인과 행정기관간의 종이문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자신이 작성하는 첨부서류, 계약서 등 제3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 증명서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첨부서류, 설계도 등 도면형식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용이하게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재정능력, 기술능력, 기타 시설·장비 등을 심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이하 보관소)를 지정하였다.

여덟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보관소가 입증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있어 원본과 다르게 위조·변조를 한 경우 허가 등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하고, 신고 등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있어 원본과 다르게 위조·변조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였다.

열 번째, 보관소에 기록된 정보의 위·변조, 증명서의 허위발급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의 강화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고, 보관소에 기록된 정보의 멸실·훼손, 임직원의 누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2)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주요 내용³⁴⁾

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할 수 있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하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능력, 재정능력, 기타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정의 결격사유

개정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현재까지 2003년 5월 개정법률안 이외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 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③ 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31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전자문서 보존대행의 효력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위탁하여 전자문서의 보존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보존된 전자문서는 보존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의 당사자, 전자문서의 내용,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의 유무 또는 그 시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기재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⑥ 업무준칙의 신고 등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문서보존 등 업무준

칙(이하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업무의 종류
2.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3. 전자문서의 보존 등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요금
4. 기타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의 보존 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의 보존 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준수사항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존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정한 전자문서의 표준이 있는 때에는 업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의 위조·변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시키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⑨ 이용자의 정보보호 등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존 등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본다.

⑩ 배상책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존 등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V.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규정의 특징과 문제점

1.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규정의 특징

1) 전통적 공증업무의 배제

종래의 서면에 의한 거래에서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등기제도와 함께 공증인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공증인은 확정일자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는 업무를 행하는 것에 의해 어떤 서면이 일정한 시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 등을 분명하게 하고,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서인 공증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증인제도는 어떤 사실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의해 해당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후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달성하는 것으로써 실제의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증인제도에서는 그 대상은 서면에 한정되어 있고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증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증인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증인법 등에 따른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개정에 의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대행 및 중계, 증명 등의 업무만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인 인증기관의 차별성 부여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의 효력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는 이러한 공인 인증기관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³⁵⁾

첫째, 공인 인증기관³⁶⁾은 전자서명의 소유자를 네트워크 상에서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신원과 가입자가 소지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와의 관계를 인증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의 발신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의 내용, 송·수신 시기 및 당사자 등에 대한 증명, 송·수신 대행 등의 업무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특히 전자문서의 전송 도중 소실 등의 경우를 감안하면 공인 전자서명만으로는 전자문서 거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셋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서 수행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명업무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는 그 기능적 성격이 다른 것이다.

넷째, 공인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이 의도하는 일정한 효과를 네트워크 상에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중계에 관한 거래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보다 상거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이 현재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별도의 법적 요건을 두어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문서증계자와의 차별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정업무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 한다)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의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³⁷⁾, 동 법 시행령 제4조

35)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2003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1)-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전계서, p.139.

36) 현재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6개로,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37) 전자정부법 제16조 제3항.

는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문서의 보관,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자세한 규정은 아직 보이지 않고, 특히 전자공문서 보관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문서증계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경우 대상 업무와 해당 전자문서증계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³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³⁹⁾

첫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통일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증계자는 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사용자 지정에 있어 좀 더 광범위한 요건을 두고 있다.

둘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모든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등에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전자문서증계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업무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중계”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셋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하여는 내용의 진정성 추정이라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하여, 전자문서증계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위와 같은 비교결과를 놓고 볼 때, 전자공문서도 전자문서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여 보관,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함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관련 규정의 문제점

첫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거래와 관련되고 신뢰할만한 제3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거래 관련협회 등으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정취소와 관련한 규정인데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보관해 왔던 전자문서의 처리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원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은 지속적인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정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취소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되는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처리문제와 전자문서 보존

38) 전자정부법 제18조 제1항.

39)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게서, p.65.

대행의 효력의 처리문제도 함께 규정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전자문서보존 등 업무준칙의 작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관소의 중립성과 국가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고유 업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이 전자문서의 이용확산과 그 이용상의 저변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광범위하게 전자문서가 쓰임에 따라 이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중계·증명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하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제3자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 내용 증명 등 효력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범규범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사회 현실에서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기존의 공증제도와 병행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대행, 중계, 증명 등의 기능을 고수함으로써 역할 상 중복적인 부분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과는 본질적 속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법적 요건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문서중계자와도 구별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개정안에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보관소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보관된 문서의 처리문제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문서보존 등 업무준칙의 작성을 전자문서보관소가 하도록 하는 것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도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한구, “e-비즈니스 관련법제의 현황 및 정비방향”, 「e-비즈니스의 새로운 이슈와 동북아 e-Hub 구축 방안」,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3.05.
-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법 이론과 실무」, 제5집, 영남민사법학회, 2002.12.
- 김영준,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06.
- 민철홍,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방안”, 「2003년도 제1회 e-Trade산학연 종합포럼 및동계정기학술발표대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
- 배대현, “전자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입법과제”, 「계명법학」, 제6집, 2002.
- 배대현·안효철·신일순·강준모, 「전자문서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12.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e-business 백서」, 2003.
- 신일순·김춘아·박민성, 「전자서명 및 인증제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12.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 이길남, “전자상거래의 보안”, 「가천길대학 논문집」, 제29집, 2001.12.
- 이창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05.
-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 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05.
- _____,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2003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I)-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02.
- 최동호·신동진, “전자문서의 개념과 종이 문서 대체가능성”, 「산경연구」, 제3집, 영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12.
- 최영봉, “전자거래에서의 인증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2.
- 電子決濟 Group 國際 F-EDI Team, “Bolero Projectの現状と課題,” 「金融情報 System」, No. 177, 1996.10.

<관련 법령>

- 관세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